

단체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2.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3년 4월 1일

○ 회부일자 : 1993년 4월 1일

3. 개정 이유

교육원의 설치목적과 조직의 성격상 연수에 관한 계획과 조정 및 연수과정 편성·운영을 분장하는 전문부서가 선임부서가 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4. 주요 골자

○ 조례 명칭에 지방자치단체를 명기함. (안 제명)

○ 현재 총무부가 선임부서로 되어 있는 직제를 교육원 설치목적에 맞도록 교학부·연수부·지도부 및 총무부 순으로 개정함. (안 제5조 제1항 및 제2항)

○ 각 부서의 분장사무를 부서 서열에 따라 재조정함. (안 제7조 - 제10조)

5. 검토 의견

단재교육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제명에 자치단체명을 첨가하여 조례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선임부서를 변경하려는 것은 단재교육원의 설치목적인 단재의 얼을 이어 받는 정신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인격을 도야하고 애국애족하는 학생상을 정립하며, 교육공무원 및 일반직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투철한 교직원관을 확립, 국민교육에 헌신하도록 하는 것으로 일반 행정부서인 총무부 보다는 교육 부서인 교학부를 선임부서로 하여 교육원설치 목적에 부합하고 교육원 운영의 효율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6. 개정조례안 및 참고자료 : 별첨